

연말연시 특별방역 (12.24. ~ 1.3.)

English

GO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정책

코로나19 알림

확진자 이동경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합안내

공지사항

확진자 현황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기업지원시책

코로나19 Q&A

주요집단사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지원

마스크 의무화 Q&A

확진자 추세

마스크 사용 캠페인

인터넷 방역단

선별진료소

부산시 상황보고

예방행동수칙

클린존 (방역안심시설)

부산 국민안심병원

일자별 현황

자가격리자 행동수칙

코로나19 신고

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심리지원

홍보(서식·앱) 다운로드

12월 31일 (Thu) 13시30분 발표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일	-	1	-	2	-
누적	19	53	66	36	210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10	4	7	1	-	1
175	117	155	176	120	76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	2	1	3	-	37
43	94	81	154	34	291

13시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브리핑(20.12.23.)



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 ~ 1.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설별 방역지침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2020.12.31.(21시) ~ 2021.1.1. (09시) :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시식·시음·건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스포츠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허용(비대면 준비 인력 포함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넘이 해맞이 등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7개 해수욕장, 호안 도로, 인근공원, 공영주차장 폐쇄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 주요 등산로 산책로 출입통제

(원칙)2.5단계 + (추가)일부 방역수칙 강화 (12.15. ~ 1.3.)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고시(제2020-531호) 병행 적용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카페 (무인카페 포함)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결혼식장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일반관리시설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 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m ²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4m ² 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p>▲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p> <p>*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p>
모임·행사	<p>▲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p>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p> <p>(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p>▲ 마스크 착용 의무화</p> <p>▲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p> <p>▲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p>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p>▲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p> <p>*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p>
기타활동	<p>▲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각종 동호회 활동	<p>▲ 비말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구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직장근무	<p>▲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p> <p>*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p> <p>▲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p> <p>* 콜센터, 유통물류센터</p>
행정명령	<p>▲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p> <p>▲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p> <p>▲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2020.12.14</p> <p>▲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36호, 재난대응과) : 2020.12.28</p>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코로나 뭐든 알리줌 10편]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의 하루





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



[코로나 뚝 알리줌 9편] 부산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생겼DAY~



[코로나 뚝 알리줌 8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생기는 일



[코로나 뭐든 알리줌 7회] 우리의 지구를 부탁해 똑똑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 부산 BMW 믿어도 되나??



[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 힘내세요 만덕씨



[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



[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 뭐? 이거 벗으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



[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





[코로나 뭘든 알리 줌 1편] 열나고 기침도 난다! 나도 혹시 독감? 코로나?

